

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'83. 11. 10 고성군고시 제20호로 상죽암군립공원이 지정되었으나 공원의 보전, 이용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군립공원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공원관리에 원할을 기하지 못했으므로 공원의 보전,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상죽암 군립공원이 현재 투자를 하여 개발을 한 상태도 아닌데 공원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
- 답 : 상죽암 군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올해부터는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, 공원관리조례가 제정되면 사후 관리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음.

#### 6. 토 론 : 없음

#### 7. 심사결과

- 1998. 7. 3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